

「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9. 25.
- 회부일자 : 2025. 10. 29.
- 상정일자 : 2025. 11. 3.

2. 제안이유

-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4호)
- 제10조(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)를 삭제하고 안 제10조(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) 신설
 - 기존 고령자 표시 스티커 조항을 삭제하고, 표시 스티커 제작·배부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안전 시설 정비,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확대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,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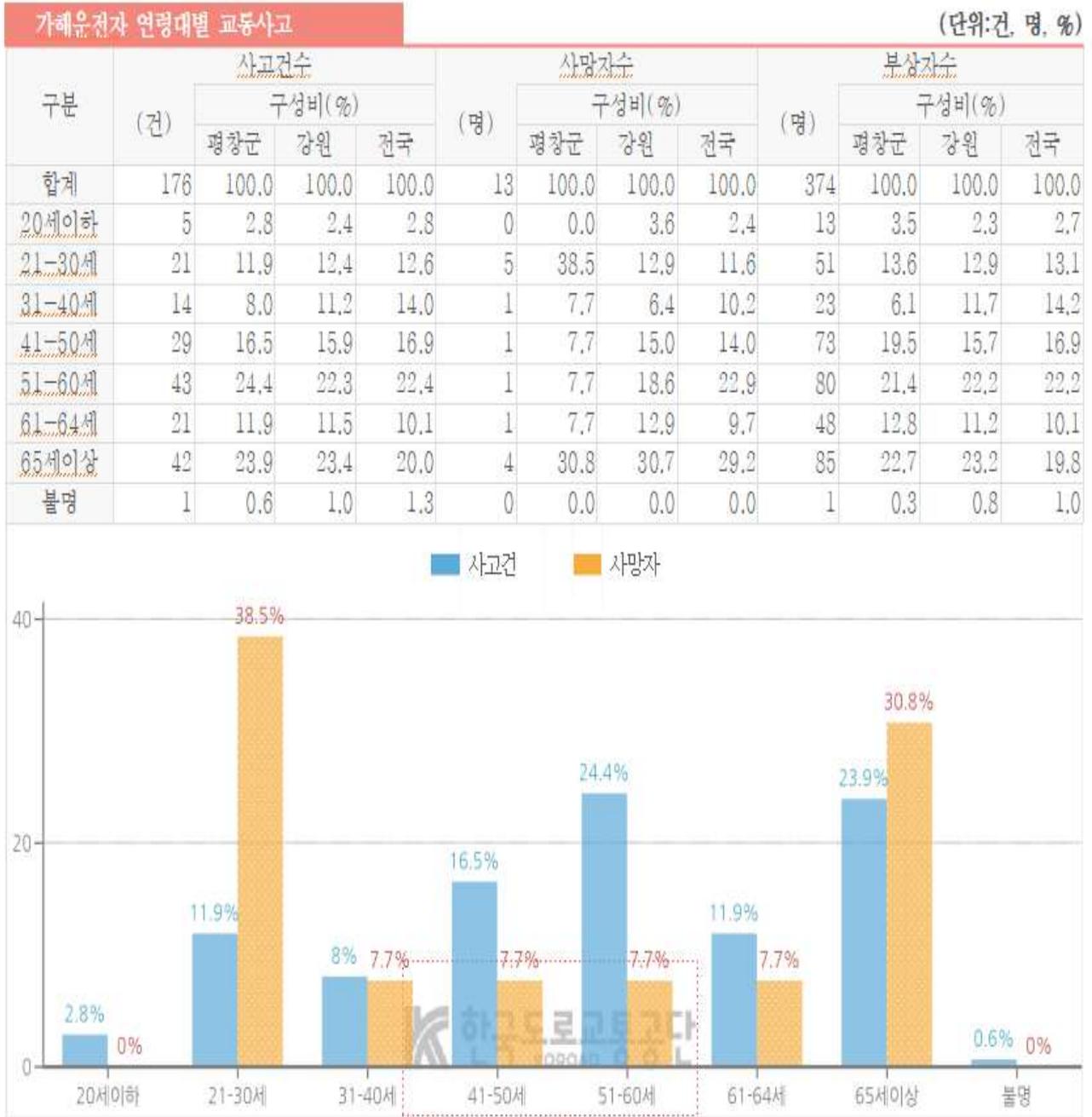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제4호에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.
- 제10조(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)를 삭제하고 안 제10조(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)를 신설하여 군수로 하여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평창군의 2023년 전체 교통사고별 점유율의 23.9%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것이며 사망자 수는 30.8%로 교통사고 발생 시 고령운전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됨.
- 고령운전자는 신체·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돌발상황에 대한 처리 속도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할 때,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 발생률 감소와 지역사회 교통안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,
-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·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, 취지는 타당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※ 참고자료 : 2023년 평창군 교통사고 통계¹⁾



1) 한국도로교통공단 지역 교통안전정보 포털 교통사고종합분석

□ **지방자치법**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8.8., 2024.1.9.>

- 1. (생략)
- 2. 주민의 복지증진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~ 다. (생략)
 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**교통안전법**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